



③ 군 입대 휴학자 중 군 제대 일자가 수업 일수 4분의 1 이내일 경우 또는 소속 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사실상 복학 허용 마감일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역 예정증명서, 수강허가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7장 재입학, 편입학, 학사 편입학, 전공예약제

- 제67조(재입학)** ①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제적 및 자퇴한 자는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재입학 정원은 직전학기 모집 단위별 제적자 총수에서 편입학 정원을 제외한 인원으로서 한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재입학생은 등록금 이외에 해당 학년도의 입학금을 가산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8조(편입학 및 학사편입학)** ① 편입학은 매 학년도 초에 실시한다.
- ② 편입학 정원은 1, 2학년 입학 정원 중 모집 단위별 제적자 수로 한다.
- ③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평생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동등 학력 이상 자로 한다.
- ④ 편입학 지원 절차는 신입학 지원 절차와 같다.
- ⑤ 학사 학위를 가진 자는 법령이 정하는 허용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다.
- ⑥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매 학기 초 정원외로 제2학년 이상에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20.6.1.>
- ⑦ 4학년 편입학생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69조(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및 이수 요구 학점)** ①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및 이수요구 학점은 전적 대학의 교과 및 이수내역 등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② 편입학생의 인정학점은 제99조 제3항의 학년별 수료기준 학점 이하로 한다.

- 제70조(전공예약제 운영)** ① 2년(4개 학기) 연속으로 희망 전공 신청자가 15명 이하일 경우 학부장은 소속 교수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전공예약제 모집을 교무처에 제안할 수 있다.

② 교무처는 제안서를 검토한 후,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8장 전부(과)

제71조(허용 인원 및 예외 사항) ① 전부(과)의 허용 인원은 전입 또는 전출 학부(과)의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각각 10% 이하로 한다.

② 학부 또는 전공(과) 통폐합, 모집 정지, 기타 부득이한 경우의 전부(과), 허용 인원, 신청 시기 및 절차, 자격, 전형 방법 및 일정 등은 총장의 허락을 받아 따로 시행한다.

제72조(신청 시기 및 절차) ① 전부(과)는 교무처에서 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부(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원서와 전입학부(과) 및 전출학부(과) 학부장의 승인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제73조(신청 자격) ① 1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합당한 자

1. 재학 중 2회 이하의 전부(과)를 승인받은 자
2. 직전학기까지 평점평균이 2.0 이상을 취득한 자
- ② 총장이 전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74조(전형방법) 전형은 전부(과) 신청서에 의한 제74조의 신청자격 서류심사 후 해당학부에서 주관하여 성적과 자체 선발 방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5조(전형일정) 전부(과) 전형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 학년도마다 따로 정한다.

제76조(교과과정 이수) 교과목 이수는 전부(과)한 학년부터 동일학년 당초 입학자와 동일하게 이수하여야 한다.

제77조(등록) 전부(과)가 허가된 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한 소정의 등록절차를 필하여야 한다(타 계열 전부(과) 시 등록금 차액 환불 및 추가 납부 포함).

제19장 계절 학기

제78조(개설) ① 계절 학기는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중에 개설할 수 있다.

② 계절 학기 개설기간은 매학기 종료 후, 15일 이상으로 하며, 개설 과목, 학점, 개강



시간, 수강료 등 필요한 사항을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제79조(개설 교과목) ① 개설 교과목은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개설과목은 수강 신청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0조(수강 대상자) 수강대상자의 자격은 재학생 및 군 휴학생으로 한다.

제81조(수강 학점) ① 계절 학기 수강 학점은 매회 6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경우에는 7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매 학점당 수강 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82조(학점 인정) ① 계절학기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기 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실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에서 D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는 학점을 인정한다.

③ 계절학기의 취득 성적은 졸업이수학점으로만 인정하며, 조기졸업, 전부(과), 학사경고, 학사제적, 장학생 선발 등의 사정기준에 적용하지 않는다.

제83조(시험) 계절 학기의 시험은 정규학과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84조(성적 평가 및 처리) 계절학기의 성적 평가 방법은 정규 학기의 평가 방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85조(수강신청 및 등록) ① 계절학기 개설 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은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계절학기 개설 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수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목에 대하여는 수강을 취소한다.

제86조(수강료) 1학점당 수강료는 해당 학기 등록금/19학점으로 산출된 총액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장 공개강좌

제87조(공개강좌) 본 대학에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일반교양, 학술 또는 실무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88조(공개강좌의 과목)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 자격 및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강좌 개설 시 공고한다.

제89조(허가) 공개강좌를 수강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개강 중 또는 방학 중 수시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90조(비용의 징수) 공개강좌의 수강생에 대하여는 강의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1장 조기 졸업

제91조(정의) 조기졸업이란 재학기간 중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게 7학기를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제92조(신청 횟수) 조기졸업신청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93조(신청 시기 및 절차)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7학기 개강 이전에 학부장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신청자격) 조기졸업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6학기말까지 매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4.2 이상인 자
2. 학칙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3. 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미취득 과목이 없는 자

제95조(자격상실)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졸업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도중 휴학하는 자
2.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7학기 성적평균이 4.19 이하인 자
4. 계절학기로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이수 요구학점을 충족한 자

제96조(조기졸업자의 학점취득) 조기졸업대상자는 4학년 이수과목을 선이수함으로써 졸업요구학점을 충족시킬 수 있다.

제97조(조기졸업자의 확정) 조기졸업자는 졸업사정회의에서 확정하되 다음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해당 학부(과) 교육과정상의 교양, 전공 등 졸업이수 요구학점을 충족한 자
2. 해당 학부(과)의 졸업평가에 합격한 자
3. TOEIC 750점 이상의 실력을 갖춘 자. 다만, 영어학 전공자는 TOEIC 800점 이상으로 한다.
4. 위의 제3호와 동등한 실력을 갖추었다고 졸업사정위원회에서 판단한 자

제98조(조기졸업 탈락자에 대한 조치) 조기졸업을 희망한 자가 탈락할 경우에는 8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최저 9학점 이상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장 졸업, 수료, 졸업 평가

제99조(졸업 및 수료의 기준) ①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은 별표와 같다.

② 순수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생은 졸업 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단, 재학 중 국제교류처 주관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영어트랙 입학생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18., 2024.1.2.>

③ 수료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은 1학년은 30학점, 2학년은 60학점, 3학년은 90학점, 4학년은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④ 학년의 진급기준은 매학년 2개 학기 이상 이수자로 한다.

제100조(졸업연기) ① 수료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교원 자격증 및 각종 자격증 관련 과목 등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학기 이전에 졸업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①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취업준비와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한 학기 이상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학기 이전에 학부장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은 재학연한 이내로 하되, 학기 단위로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매 학기말에 실시하되, 해당학기 성적이 확정된 후 승인 여부를 확정하며,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확정된 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수강신청을 하고 학점등록을 한 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한다.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중 사망, 부상, 질병, 군 입대, 해외연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지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증빙서를 첨부, 학부장이 교무처에 요청하면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

- 제102조(졸업 평가)** ① 본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졸업평가(졸업논문, 졸업시험, 졸업연주회, 졸업작품전 등 학부에서 지정하는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졸업평가는 전기졸업예정자는 11월말, 후기졸업예정자는 5월 말까지 실시한다. 다만, 학부(과)의 사정에 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학부장은 졸업평가 실시 결과를 졸업사정 1개월 전까지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졸업평가에 합격한 자는 재평가하지 않는다.

제23장 학력 조회

- 제103조(학력 조회)** ① 편입학생에 대한 학력 조회는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② 학력 조회 결과 학력에 허위 사실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적 처리한다.

제104조(학력 조회 회보) 외부로부터의 학력 조회에 대하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회보한다.

제24장 제증명 발급

제105조(증명서의 종류) 증명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2. 재적증명서 : 본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3. 졸업증명서 : 졸업한 자
4. 졸업예정증명서 : 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하고 8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이수 요구학점을 충족한 자
5. 성적증명서 : 전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
6. 휴학증명서 : 재적생으로 현재 휴학 중인 자
7. 학적증명서 :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8. 수료증명서 :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과 학점을 취득한 자
9.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 증명서 : 교직 이수자로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10. 수료예정증명서 : 해당 학년까지 수료에 필요한 학점 취득 예정자



제106조(증명서 교부) ① 증명서는 취업진로지원처에서 발급한다.

② 도서 미납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25장 학적부 기재 사항 변경

제107조(변경 절차) 학적부에 기재된 인적 사항의 변경을 원하는 자(졸업생 포함)는 소정의 정정원에 변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기재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개정된 학칙 시행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제6장제18조, 제11장제44조, 제12장제48조, 제50조 전항, 제51조제1항, 제22장제97조의 규칙은 98학년부터 적용된다. 이 조항들의 경우 이전 학번 자들은 개정 전 학사내규나 1997년도에 개별 배포된 [교육과정 편람]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칙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제10조제1항, 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44조, 제48조, 제51조제1항, 제52조, 제74조, 제75조, 제96조, 제103조제5항의 규칙은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칙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제39조는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제74조는

2000학년도 제1학기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칙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제14조제3항, 제6항, 제15조제2항은 2002학년도 제1학기 개강일부터 적용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칙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0조제7항은 2006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4의 사범학부 학부기초군 최저이수학점 기준은 2013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하며, 교양필수 세계화영역 최저이수학점 기준은 2013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자유선택학부 소속 재학생은 본인의 희망 학부를 고려하여 그 소속을 변경한다.
2. 제20조(학점포기)의 삭제는 2015학년도 입학생(2017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1~4는 삭제하고 별표로 통합한다. 다만, 별표 1~4의 삭제로 인하여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 별표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교무규칙]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교무규칙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1.2.1.>

유형별 졸업 최저이수 학점표

교양

■ 2018학번 이후

구분	백석정체성		기초교양					심화교양		소양교양				소계			
	체질과 심감	사랑의 실천	논리·비판적 사고	창의·융합적 사고	분야별 맞춤형 글쓰기	의사소통			정보 기술	수학 및 기초 과학	균형 교양	창의 융합 교양	자기개발		인성개발		
						발표와 토론	글로벌 역량	기타 외국어					백석 멘토링		협업 (실용) 및 기타소양	대인 관계	사회 봉사
전체	4학점 이상	4학점 이상	4학점 이상	4학점 이상	2학점	6학점	자유 선택	2학점 이상	2학점 이상	14학점 이상	자유 선택	P/F 1학점	2학점	4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 주1) '발표와 토론'은 인문·사회·예체능계열만 이수하고 '수학및기초과학'은 자연계열만 이수함.
 주2) 2020입학자부터 백석멘토링을 매학년마다 이수하여야 함.

■ 2017학번 이전

구 분	교양 필수						교양선택		소계
	백석정체성		기초학습			BU소양	균형교양		
	대학예배	기독교인성	의사소통		정보기술				
전체	8학점	8학점 이상	6학점 이상	2학점 이상	2학점 이상	1학점	10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 주) 백석멘토링은 2007입학자부터 1학년 1학기에 '대학생활과 진로'(0학점)를 2011졸업자부터 4학년 2학기에 「취업과 진로'(0학점)를 2017-2부터 '취·창업과 진로'(1학점)로 변경' 이수함.

전공

■ 단수(심화)전공

구 분	기초교과군	핵심·심화·응용교과군	소 계	졸업이수학점 (교양+전공)
일반학부	6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사범학부	9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문화예술학부	15학점 이상	39학점 이상		

※ 주1) 핵심, 심화, 응용교과군을 각각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주2) 문화예술학부 연기예술전공 2016학점 이전 입학자는 기초교과군 6학점 이상, 핵심·심화·응용교과군 4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주3) 2019학년도부터 타 학부(전공)에서 (자유선택) 이수한 전공학점도 18학점 범위에서 주전공 학점으로 인정 함.

■ 복수/다중전공

구 분	주전공			복수/다중전공				졸업이수학점 (교양+전공)	
	기초 교과군	핵심·심화 응용교과군	소 계	구 분	기초교과군	핵심·심화 응용교과군	소 계	복수	다중
일반학부	6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동일학부	-	30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150학점 이상
				일반학부	6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사범학부	9학점 이상	27학점 이상			
사범학부	9학점 이상	27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일반학부	6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150학점 이상
				사범학부	9학점 이상	27학점 이상			
문화예술 학부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일반학부	6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150학점 이상

※ 주1) 전공별로 핵심, 심화, 응용교과군을 각각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주2) 사범학부, 보건학부, 스포츠과학부, 문화예술학부로는 복수/다중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단, 사범학부는 교직 복수전공 이수 승인자에 한하여 복수전공 가능」
 주3) 사범학부 유아교육과와 유아특수교육과의 복수전공 이수 시 기초교과군 6학점/핵심·심화·응용교과군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주4) 부전공은 기초교과군과 핵심·심화·응용교과군을 합산하여 총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주5) 나노디그리(Nano-Degree) 과정은 해당 학부(전공)의 프로그램 교과목을 13~15학점 이수하여야 함.
 ☞ 혁신융합학부의 「AR-VR, 컬처테크, 글로벌MICE, 소셜비즈니스, 빅데이터, 글로벌IT」 융합전공은 복수전공으로만 이수가능 함.
 ☞ 디자인영상학부의 「문화상품디자인전공, 모션그래픽스전공」과 문화예술학부의 「예배사역전공」은 부전공으로만 이수가능 함.
 ☞ 재입학자는 재입학한 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학부·전공의 모집정지 및 명칭변경으로 인해 재학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입학년도 기준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II 학사